#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59

발의연월일: 2020. 8. 10.

발 의 자: 강선우·김승원·홍성국

신정훈 · 이상직 · 이수진

윤미향 · 맹성규 · 인재근

신동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운전에 있어서의 여러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로 정하고 있어(제2조제1호)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의 통행로는 도로에 포섭되지 아니하여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로의 개념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 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등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하도록 하고자 함.

덧붙여 3회 이상의 신호·지시 위반, 통행속도 위반의 경우 그 상습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회 이상의 위 행위위반 또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하여 보행자 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53조제2항제3호,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0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의2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로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로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통행로의 경우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 지정의 기준·절차 및 도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을 "시장등은"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3조제2항에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5조 또는 제17조제3 항을 각각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 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 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 또는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각각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7조제3항을 각각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호·지시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제2항제3호,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곳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2조의2에 따라 시장등 이 도로로 지정하여 고시 한 장소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 33. (생략) 2.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도로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 라 한다) 「건축법」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 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통행로의 경우 그 소유자와 협 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 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 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야 한다.

② ~ ⑥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153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

있다. 이 경우 도로 지정의 기
준·절차 및 도로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u>정한다.</u>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u>시장등은</u>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1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단서 신설>

1. ~ 9.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u><단서 신설></u>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5조 또는 제1
7조제3항을 각각 3회 이상 위
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
<u>라</u>
세154조(벌칙)
다만, 제17조제3항을 위반
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
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
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외한다)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 9. (현행과 같음)
세156조(벌칙)
<u>다만,</u>
제5조 또는 제17조제3항(제151

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1. ~ 12.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7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 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 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 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3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각각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그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제5조 및 제17
조제3항을 각각 3회 이상 위반
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

	중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